

수원지방법원 2018. 11. 21 선고 2018가단14478 판결 [토지사용료,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11. 7.

판결 선고 2018. 11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경북 봉화군 C 대 205m²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 단층 주택 55.95m², 시멘트블럭조 스테이트지붕 단층 주택 10.93m², 목조 시멘트기와 단층 주택 7.35m², 시멘트블럭조 스테이트지붕 단층 창고 17.62m²를 각 철거하고,
나. 경북 봉화군 C 대 205m²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곽동우

별지